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03. 9. 29.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기획산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취업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대책을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취업률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이 된다.
3. 위원은 대학 교직원과 동문회 임원 및 지역·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한다.

1. 취업지도의 기본 방침 수립
2. 대졸 취업 현황, 전망파악 및 그 대책 수립
3. 취업기획의 발굴·확대·제공 등에 관한 대책 수립
4. 학생들의 직업관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6. 기업체, 정부기관, 사회단체 등 취업 유관 기관과의 유대강화 방안 수립
7. 취업 동문과의 유대강화 방안 수립
8. 재학생 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9. 진로지도 방안 수립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경비)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